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 37812 (2015. 10. 07.)호로 분양신고 완료
- 본 건축물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년 10월 8일입니다.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0번지 일원
 - 대지면적: 전체 10,871.80㎡
 - 건축물 연면적: 전체 121,938,689.9㎡ (오피스텔 8,839,994.1㎡ / 아파트 109,670,539.2㎡ / 근린생활시설 3428,1566㎡)
- 공급규모: 지하 2층~지상 36층, 1개동 오피스텔 136실 오피스텔 일반분양 135세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분양 1세대 제외)
- 주차대수: 75대 [전체 892대: 아파트 795대, 오피스텔 75대(지하주차식 5대, 지하기계식 70대), 근린생활시설 22대]
- 건축물 총별 용도: 지상1층~지상36층 (오피스텔) 지하층 (기계/전기실, 주차장) 지하2층 (관리실, 주차장)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타입	타입			계	대지면적	층수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면적				
32	32.6924	29.4623	2.8451	64.9998	5.7952	1층~36층	135

■ 공급대금납부방법 (단위: 천원)

타입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단위: 원)						공급대금납부방법 (단위: 천원)					
			대지면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잔금(50%)		
32	2	4	47,073,142	79,242,598	7,924,260	134,240,000	5,000	8,424	13,424	13,424	13,424	67,120		
			47,073,142	80,551,689	8,055,169	135,680,000	5,000	8,568	13,568	13,568	13,568	67,840		
	5-6	8	47,073,142	81,851,689	8,185,169	137,110,000	5,000	8,711	13,711	13,711	13,711	68,555		
			47,073,142	84,460,780	8,446,078	139,980,000	5,000	8,998	13,998	13,998	13,998	69,990		
	7-9	12	47,073,142	87,078,962	8,707,896	142,860,000	5,000	9,286	14,286	14,286	14,286	71,430		
			47,073,142	89,688,053	8,968,805	145,730,000	5,000	9,573	14,573	14,573	14,573	72,865		
	21-29	36	47,073,142	89,688,053	8,968,805	145,730,000	5,000	9,573	14,573	14,573	14,573	72,865		
			47,073,142	92,297,144	9,229,714	148,600,000	5,000	9,860	14,860	14,860	14,860	74,300		

- 상기 분양금액은 총,항,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인목차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실별 대지면적은 공급 당시의 면적에 의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를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음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에 납부할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건축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신청자격
 - 분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
 - 상기 오피스텔은 타입별로 1인당 2건으로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 청약신청금

용도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오피스텔	100만원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로 청약신청서 납부

■ 청약일정 및 계약체결 일정

신청일자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015.10.08(목) (10:00~16:00)	* 일시: 2015. 10. 08 (목) 16:00 * 장소: 견본주택 시공사 홈페이지 (http://hshuefore.co.kr/)	* 2015.10.09(금) (10:00 ~ 16:00) * 장소: 견본주택 부산시 서구 압남동 123-56 ☎ 051-468-0002

- 당첨자 확인은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상 확인이 안되며, 당첨자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추첨 방법: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호수는 청약순증과 함께 추첨으로 결정함.

■ 계약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시	①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②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오피스텔 계약금)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등록증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제 1부),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계약시	상기 본인계약시 구비사항 외에 ①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② 위임장(계약자 본인 인감날인) ③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위임용,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상기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합감인감 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05-2220-04	국제자산신선(주) 조용운

- 분양대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입금자 표기 예시: 401호 홍길동 => 401홍길동)

- 회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함
-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응자 가능하다.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시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함. (단, 입주시 일괄 납부)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 의정일 이후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은행에서 청약금 계좌로 송금
 - 환불대상: 청약신청금 (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청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명서(은행장부 청약신청서와 동일), 신청서 사용영수증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 제3자의 본인확인증명서(은행장부 청약신청서와 동일), 위임장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준공 및 입주예정일: 2019년 7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에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임

-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서 없이 할 사항은 관계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보증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금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자료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감이 있을 때는 분양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소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엔데러,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에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량, 조망권 등이 감소(침해)될 수 있음.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색채 및 옥탑 등 외관 디자인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의 방화, 구조 및 등·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축감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일실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제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합니다. 단,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단지사 명칭·동번호, 단지 조정·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색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합니다.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단선 넓이표시 방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평형면적(㎡) X 0.3025 또는 평형면적(㎡) / 3.3058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당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함.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납부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축감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인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 하시기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도시가스 공급금액이 중앙(D=150A)이므로 부지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지역정입기(압력조정장

- 설치) 설치를 위한 정압실(가로3m×세로4m×높이3m)이 이 건축되며, 입주자들은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출에 대한 계약의 승계무기가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검검 등)의 지정일)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고
건축	(주)건축사사무소 광장	₩2,138,599,000	VAT 별도
전기	유원엔지니어링(주)	₩603,357,800	VAT 포함
소방, 정보통신	금정엔지니어링(주)	₩723,000,000	VAT 별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내용

구분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보증서번호
주상복합-오피스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권사포함) 까지	일금 구심역구천이백사십이만원정(₩9,692,420,000)	제 02312015-104-0003200호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주주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이다. 가. 주택주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예정공정률(주택주에게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률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물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함이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률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률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당해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이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입보증금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이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주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주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사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거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거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과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주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함이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총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도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주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이다.
12. 주택주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배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호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호의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채무나 증기된 채무
14. 건물별로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온선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와 관련된 금액
15. 주택주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주택주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택주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택주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호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전입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이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이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시행사, 분양사업자)	수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84171-0004844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7-8
시공사	(주)협성건설	180111-0739376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로 104 (부암동 협성프라자 6층)

■ 견본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123-56 번지
http://hshuefore.co.kr/

분양문의
051.468-0002

시행 수정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시공 (주)협성건설



북향의 클래스를 높인다

협/성/휴/포/레·부산진역 오션뷰

Location Class **Premium Class**

초역세권 교통특권 **북향의 미래가치**

Life Class **View Class**

명문학군과 생활편의시설 **47층 랜드마크 특급전망**